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655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최유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부친인 소외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21. 10.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C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D, E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이 계속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C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2021. 10.경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부친인 C에게 2억 원을 차용해줄 것이니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원고가 확인서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적인 연대보증이 아니라고 설명하여 그 말을 믿고 서명을 한 것이다. 가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2억 원을 차용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갑 제3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가 C이 운영하고 있는 D, E에 2020. 7. 9.부터 2022. 7. 28.까지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E 및 C 등이 2022. 4.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1,616,135,890원 남아있다는 취지로 E 차입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이 사건 확인서에서 연대보증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고가 법적인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